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나머지 공유자에게 하여야 하는 등기완료통지서 양식을 추가함

2. 주요내용

- 별지 양식과 같음

3.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별지 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접수번호 : 9578

대리인 : 법무사 홍길동

권리자 :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 45111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4
부동산고유번호 : 1102-2006-002634
부동산소재 :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62-24
접수일자 : 2011년 9월 14일 접수번호 : 9578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
등기원인및일자 : 2011년 9월 10일 매매

부착기준선

일련번호 : WTDI-UPRV-P6H1
비밀번호(기재순서:순번-비밀번호)

01-7952	11-7072	21-2009	31-8842	41-3168
02-5790	12-7320	22-5102	32-1924	42-7064
03-1568	13-9724	23-1903	33-1690	43-4443
04-8861	14-8752	24-5554	34-3155	44-6994
05-1205	15-8608	25-7023	35-9695	45-2263
06-8893	16-5164	26-3856	36-6031	46-2140
07-5311	17-1538	27-2339	37-8569	47-3151
08-3481	18-3188	28-8119	38-9800	48-5318
09-7450	19-7312	29-1505	39-6977	49-1314
10-1176	20-1396	30-3488	40-6557	50-6459

2011년 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



※ 등기필정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 보안스티커 안에는 다음 번 등기신청시에 필요한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 등기신청시 보안스티커를 떼어내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1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해당 순번과 함께 신청서에 기재하면 종래의 등기필증을 첨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면 자체를 첨부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따라서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면을 거래상대방이나 대리인에게 줄 필요가 없고,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 중 1개와 해당 순번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 ◆ 만일 등기필정보의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이 안 경우에는 종래의 등기필증을 분실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는 종래의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발행된 것으로 분실시 재발급되지 아니하니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자의 보존행위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접 수 일 자 : 2025년 3월14일
접 수 번 호 : 3456
등 기 목 적 : 소유권이전
등기원인및일자 : 2024년 12월2일 상속

권 리 자 :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 70110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00

권 리 자 : 이을동
(주민)등록번호 : 700407-*****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300

권 리 자 : 박병동
(주민)등록번호 : 730305-*****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00

부 동 산 소 재 :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11 (1102-2006-002634)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여 위와 같이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25년 3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



이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 락 처	(02) 3480-6041